

기안용지

발주기관 도시계획국	도 의 442-501	제출일자 1969. 11. 26.	신청사 도시계획국
처리기간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2부시장 건축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2과장	도시계획담당관 가로계획1계장 가로계획2계장	사무담당관 심우현
기안제출자	정한영	79.10	

경유 수신 참조	국안참조	일 지	11. 26
제목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지적승인		

제1안 내부검제

1. 건설부고시제230호(77.12.1)로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된 경부 복복선 구로역-시흥동 시계관 중 구로동 자량기지 지역을 제외한 전구간 및 서울시고시제387호(78.8.3)로 결정된 철도인행 도로안 중 2-114노선에 대하여도 동시에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제41호(77.3.16)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코자 하오며

2. 건설부 고시제230호(77.12.1)고시내역중 면적 산출은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검정 경과 조치에 따라 기존 철도용지를 제외한 면적이나 금번 지적고시 과정에서 기존 철도 용지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지적승인

제출 일자	1972. 11. 26	제출처	도시계획국
승인 일자		승인처	
제출인		승인인	

1. 건설부고시제230호(77.12.1) 및 서울시고시제387호(78.

8.3)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인 경부 복복선 구로역-시흥 동시개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제41호(77.3.16)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경비과와 시흥농자살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9. 11.

서울특별시장

0.철도 지적승인 조서

노선명	면적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경부선철도	84,400M ²	8.4KM	구로역	시흥동시개	폭원25-40M

법정도면표식와 같음(도면생략)

0.노선 지적승인 조서

구분	종류	류별	면적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지적승인	중도	2류	114	16m	1900M	가리봉182	시흥역	

법정도면표식와 같음(도면생략) (붙임)

제3안

수신 건설부장관

제목 동건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에 대하여 법침과 같이

지적고시하였기 이를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및 도면각1부

제4안

수신 총무처장관(문화공보관)

제목 관(기)보 기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게재외됩니다.



가. 구분: 고시

나. 게재간행: 도시계획시설(의도, 도로)지침승인

다. 게재일: 1979.12.20

라. 게재내용: 일반고시문 사본

첨부 1. 고시문 사본 2개 (1매)

제6안

수신 영등포구청장

발신: 시장

제목: 동 건

귀구 관내 도시계획사항이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
니 관계도면 정리하여 관계과에 통보하여 도시계획업무에 착오 없도록 합
시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1부

제6안

수신: 철도건설국장(토목과장)

발신: 시장

제목: 동 건

1. 귀청에서 요청하신 경우 부복선 구로역-시흥동시계간
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통보하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1부 끝.